

“함께 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50억 미만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단계로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 시행되었으며, 2단계로 금년 8.18부터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3. 이에 불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현재 진행 중 공사라도 20억~50억 공사인 경우 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필요
- 고용부는 금년말까지 계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 예정

붙 임 :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 1부
2.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직인생략)

대리 박상범 대리 이호연 과장 이상욱 사무처장 손필권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713 (2023.8.22.)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http://home.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E-mail : cak25@cak.or.kr /공개